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09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권칠승·박 정·서미화

문금주 • 전진숙 • 송옥주

민병덕 · 윤종군 · 한민수

허성무 · 김준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·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, 위법행위를 한 위탁 기업에 개선 요구,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.

그런데 조사,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·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됨. 참고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,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·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,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

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·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제척기간)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수탁·위탁거래(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. 다만,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수탁·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날부터 3년이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
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 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

면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 제1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 또 는 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<신 설> 제27조의2(제척기간) ① 제27조제 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수 탁·위탁거래(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. 다만,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수탁·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 	현 행	개 정 안
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		제27조의2(제척기간) ① 제27조제 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수 탁・위탁거래(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. 다만,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 업・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수탁・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 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 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28조 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 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취소 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 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